의안번호	제 90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1월 11일

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902

제출연월일 : 2021년 11월 1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○ 2022년 기금운용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2021년도말 조성액(A)	2022년도 운용계획			2022년도말 조성액(E=A+D)
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1,153,116	284,560	308,526	△23,966	1,129,150

○ 2022년 기금별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기 금 명	2021년말 조성액(A)	2022년말 조성액(B)	증 감 (C=B-A)
계 (14개)	**1,153,116**	**1,129,150**	**△23,966**
청소년육성기금	1,494	1,489	△5
양성평등기금	6,764	6,711	△53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19,184	114,677	△4,507
지역개발기금	851,192	864,893	13,701
자활기금	2,030	1,960	△70
사회복지기금	20,582	25,515	4,933
식품진흥기금	12,199	11,581	△618
남북교류협력기금	4,544	3,581	△963
체육진흥기금	2,808	2,832	24
중소기업육성기금	45,516	16,818	△28,698
투자진흥기금	20,265	20,480	215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	6,389	6,290	△99
재난관리기금	19,135	15,948	△3,186
환경보전기금	41,014	36,375	△4,639

3. 의안전문 : 첨 부 (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붙임 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)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

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